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657

발의연월일: 2020. 8. 4.

발 의 자:오영환·전용기·이정문

강병원 · 소병철 · 한병도

이수진 · 진성준 · 최혜영

이탄희 · 홍성국 · 정청래

장경태 · 김남국 · 양기대

한준호 · 홍정민 의원

(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민간이 발주하는 소방시설 공사의 경우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거나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공사대금 지급보증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서로 간에 협의 없이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 거나 수급인이 임의로 공사를 중단할 경우 발주자와 수급인 모두 이 를 해결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가 미비함.

또한, 소방기술자는 일정한 자격·학력 또는 경력만 갖추면 자격수 첩을 발급 받을 수 있어 이론과 실무능력이 부족한 상태로 현장에 배 치되고 있어 전문성이 부족하고 기술의 지도·조언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발주자가 수급인으로부터 계약이행 보증을 받는 경우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보험 가입비용 등을 수급인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며(안 제21조의4 신설, 제40조제1항제10의4호), 소방청장은 소방기술자의 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소방기술자 양성 등의 교육 훈련을 실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업무를 협회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의2 신설, 제33조제4항).

법률 제 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4(공사대금지급의 보증 등) ① 수급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외의 자가 발주하는 공사를 도 급받은 경우로서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는 때 에는 발주자도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는 공사대금 지급보증 또는 담보 제 공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수급인이 그에 상응하는 보험 또는 공 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계약의 이행 보증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에 보험료 또는 공제료(이하 "보험료등"이라 한다)를 지급하여야 한 다.

- ② 발주자 및 수급인은 소규모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제1항에 따른 계약이행의 보증이나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등을 아니 할 수 있다.
- ③ 발주자가 제1항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담보의 제공 또는 보험료등의 지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급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 하여 발주자에게 그 이행을 통지하고 공사의 시공을 중지할 수 있

- 다. 발주자가 통지한 기간 내에 그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급 인은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라 수급인이 공사를 중지하거나 도급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공사 중지나 도급계약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방법이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8조의2(소방기술자 양성 및 교육 등) ① 소방청장은 소방기술자를 육성하고 소방기술자의 전문기술능력 향상을 위하여 소방기술자와 제28조에 따라 소방기술 경력 등을 인정받으려는 사람의 양성·인 정 교육(이하 "소방기술자 양성·인정 교육"이라 한다) 훈련을 실시 할 수 있다.
 - ② 소방청장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소방기술자 양성·인정 교육훈 련을 위하여 소방기술자 양성·인정 교육 훈련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방기술자의 양성·인정 교육훈련 및 교육훈련기관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제33조제4항 중 "제28조에 따른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경력의 인정"을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제28조에 따른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경력의 인정업무
- 2. 제28조의2에 따른 소방기술인력의 양성·인정교육훈련 업무 제40조제1항에 제10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4.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담보의 제공 또는 보험료등의 지급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사대금 지급의 보증 등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4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소방시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u><신 설></u> | 제21조의4(공사대금지급의 보증 |
| | 등) ① 수급인이 국가, 지방자치 |
| | 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 | 공공기관 외의 자가 발주하는 |
| | 공사를 도급받은 경우로서 수급 |
| | 인이 발주자에게 계약의 이행을 |
| | 보증하는 때에는 발주자도 수급 |
| | 인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 |
| |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 |
| | 다. 다만, 발주자는 공사대금 지 |
| | 급보증 또는 담보 제공을 하기 |
| | 곤란한 경우에는 수급인이 그에 |
| | 상응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 |
| | 입할 수 있도록 계약의 이행 보 |
| | 증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
| | 보험료 또는 공제료(이하 "보 |
| | 험료등"이라 한다)를 지급하여 |
| | <u>야 한다.</u> |
| | ② 발주자 및 수급인은 소규모 |
| | 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 |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제1항에 |
| | 따른 계약이행의 보증이나 공사 |
| | 대금의 지급보증 등을 아니 할 |
| | <u>수 있다.</u> |

③ 발주자가 제1항에 따른 공사 대금의 지급보증, 담보의 제공 또는 보험료등의 지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급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발주자에게 그 이행을 통지하고 공사의 시공을 중지할 수 있다. 발주자가 통지 한 기간 내에 그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급인은 도급계 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수급인이 공사를 중지하거나 도급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공사 중지나 도급계약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방법이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의2(소방기술자 양성 및 교육 등) ① 소방청장은 소방기술자를 육성하고 소방기술자의 전문기술능력 향상을 위하여 소방기술자와 제28조에 따라 소방기술 경력 등을 인정받

<신 설>

제33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① | 제33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① ~ ③ (생 략)

④ 소방청장은 제28조에 따른④ ----- 다음 각 호의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 • 경력의 인정 업무를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 소 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 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으려는 사람의 양성·인정 교 육(이하 "소방기술자 양성・인 정 교육"이라 한다) 훈련을 실 시할 수 있다.

② 소방청장은 전문적이고 체계 적인 소방기술자 양성・인정 교 육훈련을 위하여 소방기술자 양 성 · 인정 교육 훈련기관을 지정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방 기술자의 양성・인정 교육훈련 및 교육훈련기관 지정 등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령으로 정한다.

~ ③ (현행과 같음)

- 1. 제28조에 따른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경력의 인 정업무
- 2. 제28조의2에 따른 소방기술

제4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

1. ~ 10의3. (생 략) <u><신 설></u>

11. ~ 14. (생략)

② (생략)

| <u>인력의 양</u> | 성 · 인정교육훈련 |
|--------------|------------|
| <u>업무</u> | |
| 제40조(과태료) | (1) |

---.

 1. ~ 10의3. (현행과 같음)
 10의4.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담보의 제공 또는 보험료등의 지급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

<u>니한 자</u>

11. ~ 1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